

납세의무 성립일과 정리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해설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세정과 서기관

1. 의 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납처분과는 달리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정리법의 절차와 지방세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추상적 납세의무”와 “구체적 납세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추상적 납세의무는 법정된 조세채권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이를 과세권자가 확정하고 납부 명령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단계인 추상적 납세의무는 성립이후에 징세권의 행사는 할 수가 있다.

조세채권은 공공성이 강한 채권이라는 특

수성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주민을 위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확대하여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승계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다.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부과지납부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여 소멸시키고 있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에서는 회사정리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바로 지방세 채권을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되어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리채권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회사정

리개시결정일이전에 징수할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비록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채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2. 납세의무 성립일

1) 개요

(1) 의미

일반적인 매매에 있어서 사인간의 계약시 계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조세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자의 위치에 서고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 중 등록세의 납세의무성립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이전에 납부한 후에 등기신청을 하게되며 이때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됨으로 납세의무의 확정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특징이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액과 세율의 적용기준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납세의무 성

립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당시의 과표와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과 현황 등을 적용하게 되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날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표와 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서 납세의무의 성립과 지방세법령의 적용관계를 검토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당초의 비과세나 감면의 취지에 위배되어 추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추정사유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1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부동산 취득	법령개정
+	+
추정유예기간1년	(1년 → 3년)
유예기간종료(1년)	유예기간종료(3년)
+	+
추정여부판단(1)	추정여부판단(2)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시점에서 당해 부동산은 추정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2)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29조에

서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이때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차이가 있다.

(가)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의 경우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날(시행령 제73조의 취득시기)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예: 면허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음식점 허가 등은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됨)

주민세 : 균등할(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소득할(소득세 · 법인세 · 농업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신규등록, 말소등록시는 그 등록일)

※ 자동차세는 연세액 제도로 되어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자동차를 원시취득하거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용폐지일을 기준으로 수시 과세한다.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인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종합

토지세 : 과세기준일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매년 12월 31일)

도축세 : 소, 돼지를 도살하는 때

경주 · 마권세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사업소세 : 재산할(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종업원할(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역개발세

발전용수 :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함)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컨테이너 : 컨테이너 부두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 · 출항하는 때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특별징수세목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수시부과하는 지방세 :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 가산금과 가산세

가산금은 부과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

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기한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수시부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 성립일은 각각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판례] 취득세 가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 판단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대판 95다51113 96. 3. 8)

(3)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효과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그 시점에서 다음의 효력이 발생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적용의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 ①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을 위한 법령 적용의 기준
- ② 납세지 관할 결정의 기준
- ③ 납세의무자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과 그 범위결정의 기준
- ④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결정기준
- ⑤ 부과시기의 결정기준
- ⑥ 부과체척기간 기산의 판단기준
- ⑦ 징수유예의 판단에 관한 시기의 기초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지방세법령의 적용문제

(1) 개정지방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납세의무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의 법령을 신뢰하고 어떤 경제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라면 새로이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즉, 종전규정에서는 감면대상 → 과세대상으로 변경개정 시 신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경우 비록 납세의무성립당시에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함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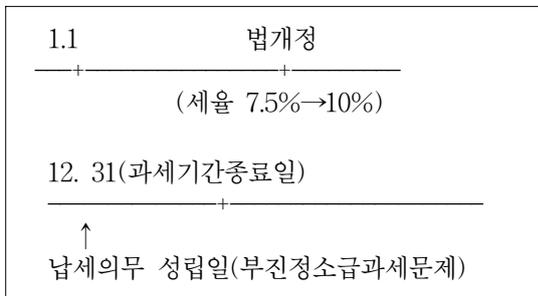
〈신뢰보호의 원칙적용요소〉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 납세자의 공적 견해에 대해 신뢰하며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는 견해표명에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함
-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불이익 초래

(2) 법령의 개정과 부진정 소급과세문제
예를 들면 일정기간의 소득을 과세요건으

로 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세율이 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7.5% → 10%)에는 변경된 세율(10%)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소득할 주민세는 통상적으로 매년 12월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나 개정 전까지는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인 12월 31이전에 법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과세 하더라도 소급과세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지만 타당하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부진정 소급과세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간 과세의 경우 과세요건 성립일 이전에 불리하게 법률을 개정한 경우라도 적용 세율은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신법우선의 원칙적용과 납세의무의 성립관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통상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면서 부칙에 적용시기를 두

고 있으며 시행시기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새로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4) 법률부칙규정(경과규정)과 개정 법률의 적용문제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서 『제1항은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하되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며,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당초의 감면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사유가 취득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추징여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이전에 법령이 개정되어 유예기간이 연장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나 추징요건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에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예기간경과시점에서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부칙규정에 그 적용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에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구법과 신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의 감면 후 추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유예기간이 2년이었으나 3년으로 연장된 경우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의 판단

1)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의 변천

지방세 채권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왜 지방세 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문제와의 직접 충돌이 되기 때문에 위헌시비가 계속 있어 온 것이다. 그래도 지방세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야 하는 사유는 지방세 채권의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갖춘 채권이며 공시성, 무대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세 채권 우선의 원칙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체납처분비용을 충당

할 목적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도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바 변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우선원칙의 적용관련 판례]

- 구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도 헌법에 위배된다. (헌재91헌가6, '91. 11. 25, 헌재89헌가95, '90. 9. 3)
-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내 담보목적에 된 자산은 국세 등에 우선 못한다는 규정이 위헌판결 나더라도 이미 근거한 모든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대판92누9463, '94. 10. 28)
- 구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킴. (대법93다4749, '94. 1. 25)
-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헌재94헌마18, 1995. 8. 28)

2)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납비용을 충당할 목적이거나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관련 규정의 변천]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년 도 별	관련조문 내용	비 고
1978. 12. 6 (법률제3154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90. 9. 3 선고 89헌가 95)에 의거 『...으로부터 1년 전에』 부분은 한정 위헌 결정됨
1991. 12. 14 (법률제4415호)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뿐 구체적인 세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헌
1994. 12. 22 (법률제4794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5. 12. 6 (법률제4995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당해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96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음 (취득세 등 7개 세목)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로 함.	5개 세목으로 함(헌재 91헌가1 94.8.31반영)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을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①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지방세 채권에 우

선하여 징수된다.

②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③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법정 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부과고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등에 대한 법정기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압류한 재산의 법정기일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지방세채권과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판

단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법정기일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변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방법에 따라 그 법정기일에 차이가 있다. 지방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유형은 첫째, 자기부과제도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납부시점에서 확정이 되며, 둘째, 정부부과제도로써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보통 징수하는 세목이 이에 해당되며 고지서를 발송하는 조사결정시점이 된다.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확정	법정기일
-신고납부 세목: 신고일	-신고납부세목: 신고일
-부과고지 세목: 결정일	-부과고지 세목: 고지서 발송일
-특별징수 세목: 특별징수 시	-특별징수 세목: 특별징수 시

①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법정기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제31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날을 법정기일로 보면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어 취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없고 신고납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법정기일은 『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고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소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이 미비하지만 대법원판례에서는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고 있다.

[판례] 지방세 우선의 시기 판단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8다54298 99.

1. 26)

만약,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고지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신고납부세목의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 당해 지방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되는 것이나, 신고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부과고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중 등록세의 경우 법정기일 판단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등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의무성립일인 등기일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법정기일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소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지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례] 당해세 우선효력의 판단

96. 1. 시행된 지방세법 제31조는 해당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등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재산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당해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에도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는 바,

당해세 우선징수 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시행이후에 부과된 당해세는 위 개정법률 시행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위 지방세법상의 당해세 우선징수규정은 96. 1. 1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원심판결이 있으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개정법률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임(대판 98다60880 99. 4.9)

[판례] 지방세우선의 시기판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 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 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대판 98다59125 99. 3. 12)

[판례] 당해세의 범위

1.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세법(1991. 12. 1 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은 그 안에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화상의 소득세,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나, 이를 당해 재산

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사례] 지방세 우선 적용시기와 당해세
'95. 12. 6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하여 '96.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설정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전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포함)이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은 우선할 수 없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즉, '96. 1. 1이후일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행자부 세정13407-아619, '98. 10. 8)

② 담보 채권자의 우선권 입증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담보채권을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등본,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전의 것, 은

행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등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③ 당해세와 법정기일의 관계

담보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앞서면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이다. 이 때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그 범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해세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볼 때 종전('96년 이후부터 '99년말 까지)에는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가 당해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거래과세가 제외되도록 하였는 바, 현행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세의 적용문제는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당해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록 당해세로 인정하지만 거래과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거 위헌 결정된 만큼 당해세로 인정을 하지 아니할 것인가가 대립되나 현재는 후자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위헌 결정된 만큼 당해세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사례] 당해세의 적용범위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11호 1996. 12. 31개정) 제14조의4의 규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당해세에 포함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소득세와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게 되면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1994. 8. 31, 91헌가1 참조)을 한 바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515, 2000. 4. 18)

[사례] 법정기일과 압류의 효력범위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아176, '98. 8. 11)

[사례] 당해세의 적용시기와 우선순위 판단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 제31조제2항제3호에 의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부칙(1995. 12. 6, 법률 제4995호)제1조에서 1996. 1. 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시행시기('96. 1. 1) 이전에 이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로서 그 담보권 설정이 법정기일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우선권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내무부 세정13407-1761, '98. 1. 5)

(3) 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을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과 서민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특별·광역시(군지역 제외)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
- 주민등록 : 주택 경매신청 등기전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칠 것
- 범위 : 특별·광역시(군지역 제외) 1,200만원이하, 기타지역 800만원이하
- 변제한도 :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우선
- 임차인의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임차인이라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

[사례] 소액보증금과 지방세 우선의 범위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 우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광주광역시의 경우 1,20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우선 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아 1054, '98. 12. 27)

(4) 근로채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지방세 채권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순위 판단은 다음의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5) 가등기 담보채권과 우선순위판단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락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지방세우선의 원칙 적용은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본등기를 기준으로 지방세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 통정허위행위와 지방세 우선 징수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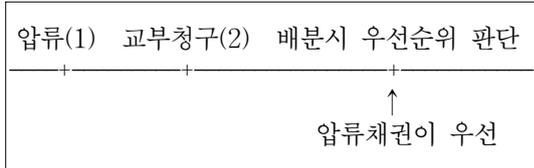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3)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검토

(1)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배분의 순위판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2)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교부청구자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지방세 우선 순위의 결정판단

(1)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당해세나 담보채권에 의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제2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기재사항]

-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체납처분비의 범위에는 서류송달비용, 한국자산공사공매비용 등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행자부 세정13430 - 491, 99. 4. 27에 시달한 지방세 체납처분비 징수업무지침을 참조)은 다음과 같다.

[체납처분비 징수의 일반원칙]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상황에 따라 체납처분비 산출내용 및 금액은 상이하므로 실제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징수해야 하고 납기경과 후 「독촉장발부 우송료」, 압류조서 작성 전에 납세자에 대한 「압류

물 건 별	내 용	금 액
부 동 산	<압류> · 등기부 열람 · 등기부등본 발급 · 압류촉탁 우송 · 압류사실 통보 <직접공매시> · 공매통지서 우송 · 이해관계인 통보 · 감정수수료 · 배분통지서 · 소유권이전 등기제비용 <자산관리공사매각의뢰시> · 공매의뢰서 우송 · 자산관리공사 지급비용 <압류해제> · 압류해제 촉탁서 송부 · 압류해제 통보	열람료+여비 수수료 등기우송료+인지대 등기우송료 등기우편료 이해관계인×등기우편료 실비 이해관계인×등기우편료 실비 등기우편료 실비(자산관리공사 청구금액) 등기우송료+인지대 등기우송료
자 동 차	<압류> · 압류통지서 우송 · 압류해제 통지서 · 통지서, 고지서, 봉투 등 용지대 <공매> · 견인료 · 보관료 · 공매통지서 · 공매비용 · 기타	등기우송료 등기우송료 실비 실비(지급 또는 소요비용) 실비(지급 또는 소요비용) 등기우송료 자산관리공사 감정비+수수료 실비
유가증권	○ 주식 등 유가증권 압류	출장비 등 실비
귀금속 등	○ 귀금속 등 압류	은행·금고 보관비용
동 산	○ 동산 등 직접 공매시	공고료, 이해관계인 통지, 감정비등 실비
채 권	○ 급여, 예금 기타 채권 · 압류통지서 우송 · 압류해제 통지	등기우편료(채납자, 채무자) 등기우편료(채납자, 채무자)

※ 위 채납처분 항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만 채납처분비에 포함해야 함.

※ 채납세액과 채납처분비 납부확인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예고통지서 우송료」 등 사전예고통지에 소요된 경비는 직접채납처분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채납처분 관련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채납처분비 산정에서 제외하되, 채납처분 업무만을 위해 별도 보조인력을 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채납처분비 징수 세부요령]

- ㉠ 채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 채납처분비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 채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채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채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 압류물건이 있는 채납자가 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채납처분비 고지서 발부
- 예1) 압류물건의 채납자가 과세관청을 방문 채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시
- 예2)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후 채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
 - 채납세액납세고지서 발부시 채납처분비 고지서 동시 발부 [채납처분비 산출방법(예시)]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종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하며 이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라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채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위의 지방세 중에서 도세(취득세, 등록세 등)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우선 순위는 채납처분비 50천원, 가산금350천원, 취득세300천원을 우선배분하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우선징수 순위가 별도로 없으나 시군별 부과징수규칙에 의거 달리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

[예시] 배당금을 1,000천원을 수령한 후 채납된 지방세액 1,500천원을 충당하는 순서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채납액 : 채납처분비 50천원, 가산금 및 증가산금 350천원, 취득세300천원, 자동차세300천원, 재산세 500천원-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당해세가 아님)

4.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의 우선 적용 판단

1) 의의

최근 기업들이 경영감량 등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조직변경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업마다 이에 따른 모든 자구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구

조조정이라 함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조직 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에 기울이고 있는 모든 자구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합병, 분할과 같이 기업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주력업종 위주로 사업을 개편하는 사업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이 있는 것이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의 세제를 과감히 개선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여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바, 이 경우 도산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채권을 가지는 이해관계인과 지방세 채권과의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사정리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하는 제도인바, 현재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갱생의 가망이 있거나 산업구조상 꼭 필요한 기업이라면 그러한 규모의 시설 및 경영시스템을 다시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 현재 기업을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정리는 회사를 정리하여 채권 및 채무를 상계 내지는 상환하여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회사를 갱생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지방세법상의 조세채권은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되며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이 되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 채권이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므로 정리채권인 지방세 채권의 경우도 소멸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정리법 제210조의 규정에서는 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있어서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단,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 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 채권의 우선과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 상이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세의 배당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상에서 지방세 채권 우선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리채권의 연장선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 취득세 가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 판단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대판 95다51113 96. 3. 8)

[사례] 가압류권자와 공매대금 배분대상자 판단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바, 체납처분결과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자439, '98. 6. 5)

[판례] 가압류의 효력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

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대판88다카42, '89. 1. 31)

[판례] 지방세우선의 시기판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 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

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대판 98다59125 99. 3. 12)

[사례] 법정기일의 범위와 우선순위 판단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4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발송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은 전세권 등이 우선하고, 발송일 후에 설정된 전세권 등은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해 재산에 과세되는 당해세의 경우 이에 불구하고 지방세가 우선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기타 권리(전세권 등)이 병존하는 경우 재산세는 당해세이므로 우선되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동조항의 우선순위 결정기준(법정기일)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지게 됨.(행자부 세정13407 - 227, 2000. 02. 28)

지방세법의 부과와 징수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제61조에 의하면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라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귀하명의로 경료되기 이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당해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전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이 가능함.(내무부 세정13407-315, 1997. 4. 8.)

[판례] 가산세의 법정기일 판단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 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와 제 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대판2001다10076, 2001. 4. 24.)

2) 회사정리절차와 유형

(1) 기업의 도산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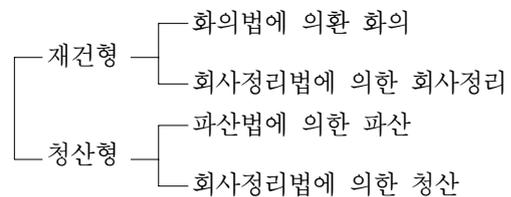
기업의 도산 유형은 법정정리절차와 사적

(나) 파산, 회사정리, 화의와의 비교

구 분	파 산	회사정리	화 의
목적	일정시점에서 기업해체, 영업활동 중단	기업활동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재정비 (회사의 갱생)	파산의 소극적 예방
관계인과 관리인의 권한범위	재산의 환가 등 파산목적에 권한만 소유	회사의 재산관리·처분권 및 사업경영권	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감독적 지위
주주의 범위	- 주주와 채권자는 대립관계 - 주식의 가치 상실	- 주주는 관계인 집단의 구성원 - 채권자와 주주는 회사의 대립적 관계	- 일반채권자로 제한되며, 주주는 채권자와 대립관계

인 계약에 의하여 정리되는 절차가 있는 바 법정절차에는 회사정리법 등의 규정의 의하여 회사의 회생을 목적으로하는 재건형 회사정리가 있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정리절차는 정리회사와 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가) 법정정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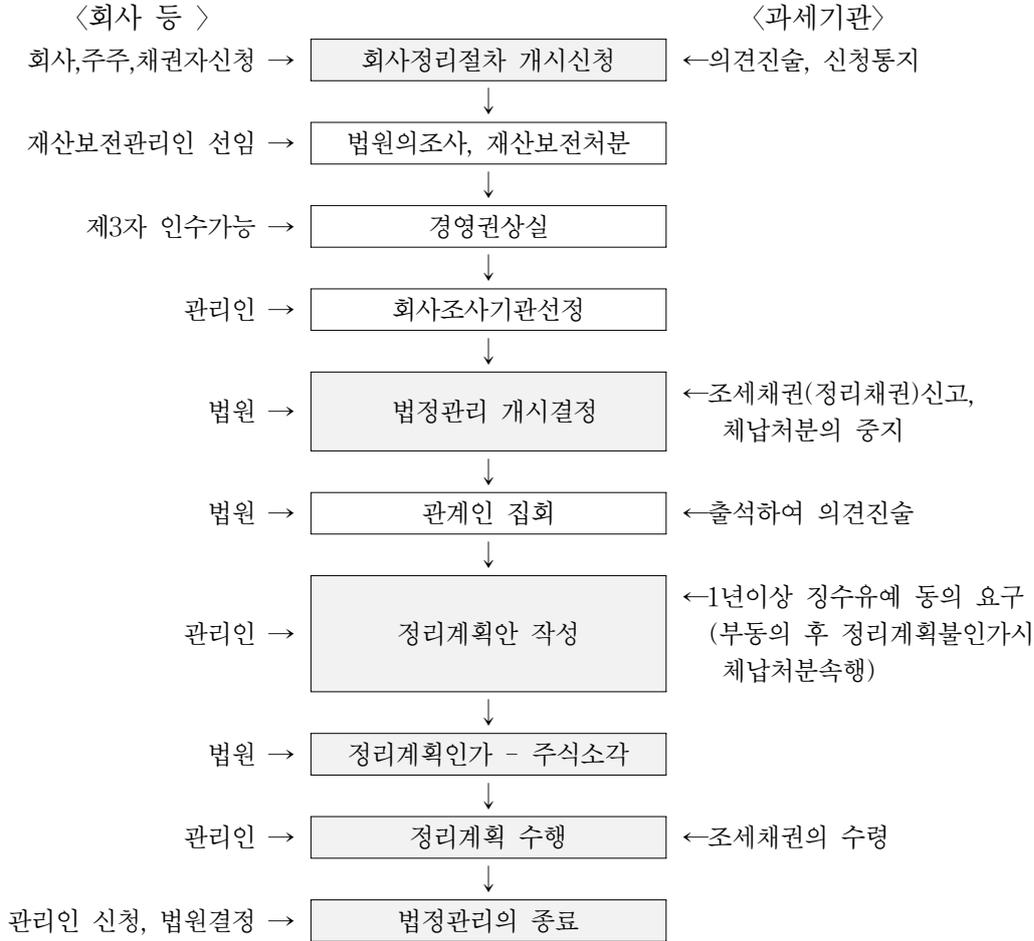


(2) 사적정리절차: 도산기업과 채권자간의 직접 협의(재건형, 청산형)

구 분	주 요 내 용	효 과
화 의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원인의 사실이 없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채권자가 화의조건을 제시하고 채권자들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파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회의법, 파산법) ○ 채권자 집회가 화의를 가결하면 법원은 화의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하여 신고(공고)하며, 「인가결정이 확정」 되면 화의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선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 전속 - 가압류 효력 상실
회 사 정 리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궁핍으로 도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으로써 도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법적장치(회사정리법) ※ 법정관리 : 회사정리법을 바탕으로 도산에 직면한 기업의 모든 채무지급과 자산처분을 동결, 경영 정상화까지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전반에 책임지는 정리방식 ○ 정리절차 개시는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직권으로 파산절차,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를 명령할 수 있음 ○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 결정 시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정리채권, 담보권→정리담보권 - 강제집행금지, 파산절차금지, 화의절차 효력 소멸 -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면제하거나 소멸할 수 없음 ○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시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정리계획대로 변경 - 관리인은 정리계획을 집행 - 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권리관계는 화의조건대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변경됨
청 산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청산 :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산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채권·채무의 처리,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분배·처분방식에 따라 청산하는 것 	

3) 회사정리절차

(1) 회사정리절차의 개요



(2) 세부정리절차 내용

(가) 회사정리개시의 신청

회사정리절차는 신청권자가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이 있을 때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신청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때이고, 둘째는 회사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이다. 여기서는 변제불능이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가 현재 불가능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히 지장이 생기는 경우이면 된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 제1

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자연인과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산원인이고 후자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파산원인이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그것이 생길 우려만 있으면 된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에 한하며 상법상의 타회사는 정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정리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리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회사가 신청할 때는 회사 자신이 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한다.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으며 수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10분의 1 이상이 되어도 무방하다.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32조 제1항).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비송사건으로 이를 접수한다.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법인의 본점 등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 법원의 조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며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치를 대별하면 감독관청 등에 대한 통지, 개시결정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조사, 보전처분 중지명령제도 등이 있다.

①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감독행정청, 금융감독위원회,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통지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통지를 하게 한 것은 통지의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이다. 통지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송달에 의할 필요도 없다.

② 법원의 조사

법원은 신청을 받은 뒤 정리절차개시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행한다. 대표이사나 관계인의 심문(법 제36조), 법원에 의한 직접조사, 조사위원을 통한 조사 등이 있다.

㉠ 회사대표자의 심문

회사정리에 관한 재판은 임의적 변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법 제9조 제1항) 대표자의 심문은 필요적 심문으로 하였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전무이사, 경리 또는 재무담당이사 등으로 심문할 수도 있으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1~2주일 내에 심문기간을 정하여 대표이사 및 대표인을 소환한다.

㉡ 법원에 의한 직접조사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의견청취, 대표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절차개시의 조건 구비여부를 조사하고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회사가 장래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의 조사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 회사 등에 대하

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에 관한 조사의 촉탁, 감정의 촉탁을 할 수도 있다.

㉔ 조사위원을 통한 조사

법원은 개시원인의 유무와 절차개시의 조건 특히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정리절차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1항). 조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③ 보전처분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전처분은 회사기업의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정리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형, 보전처분과 기업의 계속가치의 잠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의 적극자산의 감소, 소극자산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를 명하는 업무제한형,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조직법상 보전처분이 있다.

④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그 자체는 회사에 대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체납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때는 이미 회사재산이 정리되어 정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정리법은 개시결정 전에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강제경매, 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중지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⑤ 신청에 관한 재판

법원은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친 후 신청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된다(법 제45조)

(다)법원의 회사정리개시결정

① 관리인의 선임

법원이 정리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존속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잃게 된다. 관리인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필수기관으로서 법원은 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 관계인 집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자적 권한 (법 제53조) ②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고정 관리인과 같은 권한 ③ 정리계획의 작성 및 정리계획을 실시하는 법원의 기관적 성격을 가지는 권한

② 정리채권의 신고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에 관한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를 정리담보권이라 한다.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원은 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주식의 신고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정리채권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일 내에 2월 이하이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이 정리기간 중에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본세와 가산금을 함께 신고하여야 실권이 되지 아니하며 미신고시에는 실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③ 공익채권의 처리

정리채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익채권이 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이후에 회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생긴 채권이다. 공익채권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따라서 지방세 중에도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리절차에 불구하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 정리계획안의 작성

① 정리계획안의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안이라고 함은 장래 회사의 운영을 어떻게 하며 채무의 변제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리계획안에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권리변제와 변제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일부채무의 면제도 포함된다.

② 정리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정리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처진다. 관계인집회라고 함은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이 회동하는 집회를 말한다. 정리계획안은 심의가 끝난 후 그 가부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치게 된다. 결의는 조별로 행하며 조의 분류는 법원이 정하나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자조, 정리담보권자조, 주주조로 분류된다. 회사정리법 제205조에 정리계획안의 가결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즉, 정리채권자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액의 3분의 2 이상인 동의, 정리담보권자조에 있어서는 기한의 연장의 경우에는 의결권액의 4분의 3 이상, 정리담보권의 감면 기타 기한의 연장 이외의 권리변제의 경우에는 5분의 4의 동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의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주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

는 조에 있어서든지 가결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이 된다. 만일 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이미 개시된 정리절차는 폐지된다.

(마) 정리계획의 인가와 수행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다시 법원이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그것으로 완료한다. 인가결정이 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정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되거나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정하여지지 않으면 실권한다. 관리인은 정리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정리절차의 종료 및 폐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271조)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도중에 그 절차를 계속시키는 것을 폐지라고 한다. 정리계획안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리계획안이 일정시기까지 가결되지 않으면 절차는 폐지된다.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을 명백한 때에는 절차를 폐지한다. 따라서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과세권자는 즉시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4)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와의 관계

(1) 정리채권의 일종으로서 지방세채권의 특례

일반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하나, 지방세 채권은 정리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때에 회사정리신청이 있음을 통지 받게 되는 것이다.

(2) 사전동의

정리절차개시 결정에 의하여 권리의 개별적 행사 및 채납처분도 금지되나 그 기간(1년)이 한정되고 그 이상 연장(6월)할 경우에는 징수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제1항에 계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채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채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채권의 특례

정리채권은 신고를 요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권이 되지만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신고시기의 특례가 있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 제5호에 제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미동의시 환가의 유예

정리계획에서 원칙적으로 징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가의 유예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징수의 유예 또는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5) 공익채권의 범위와 변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의 일부는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 회사정리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공익채권의 범위]

1.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
2.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3.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그러나 정리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은 제외한다.
4. 제284조와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비용과 보상금
5.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정리절차개시 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11.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제12호에 제기한 이외의 것

(6) 조세채권의 우선권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금 등도 후순위 채권으로 되지 아니하고 조세채권으로서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다음에 제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제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2) 지방세 채권과 정리채권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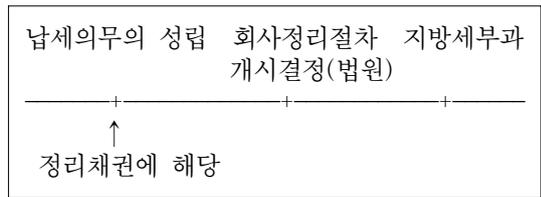
(1)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하며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한다. 양 채권의 커다란 차이는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여야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익채권은 정리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변제되는 것이다.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당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지방세 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느냐 여부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일』과 지방세 채권의 『성립일』을 비교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경우에는 정리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정리절차개시일전에 과세요건을 성립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객관적,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면 경정 또는 결정이 그 이후에 되더라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됨으로 공익채권이 된다.

그런데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납부를 함으로서 세무서로부터 추정되는 등 경정결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연장으로 보아 당초처분(법인세를 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할 주민세도 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여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시부과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납세의무성립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당초처분시점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견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그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는 당초처분을 수정한 것으로 보아서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경정처분시점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견해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정리채권에 해당여부 판단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도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시 ○○구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17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한 1994년, 1995년, 1996년의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1999. 11. 1.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시장과 ○○시장은 위 증액경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8. 8.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 4.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6. 9.과 12. 8. 등 2회에 걸쳐 관계인집회가 개최된 다음 2000. 2. 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인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때 즉 1999. 11. 1.에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이 실권·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두7852, 2004. 7.8)

2) 정리채권과 법인세할주민세의 범위
 조세채권이라도 법원의 정리개시결정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정리채권으로서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다. 현행 회사정리법에서는 납세의무성립을 위주로 정리채권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납세의무성립일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 동일하게 두고 있는 이상 법원의 회사정리결정일 전에 법인세가 성립한 경우라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권되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당초처분시점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경정처분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후에 처분되더라도 경정처분일을 새로운 납세의무의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경정처분시점)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사례] 정리채권의 범위

정리채무로서의 지방세 가산금과 정리계획안 이후 신규발생한 지방세는 별개의 것으로서, 정당한 내용과 절차에 의해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면 정리채무로서의 지방세 징수금은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신고된 조세채권액, 인가된 정리계획안

의 내용 등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회사정리법상 항고 등에 관한 문제는 법원행정처 소관이라 판단임(행자부 세정13407- 545, 2001. 5. 22)

[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95도2653, 1997.5.9)

[사례] 정리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 판단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 또는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9. 11. 1 결정고지된 '94~'98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위 법인세가 경정·결정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1999. 4. 23)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정리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할주민세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행자부 세정 13407-532, 2000. 4. 20)

[사례] 법인세할 주민세의 정리채권해당

여부 판단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 법인세의 확정결정일 이전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세액이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에 정리채권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행심2000-661, 2000. 8. 29.)

[사례] 법정기일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법정 기일은 조세 채권과 저당권 등 담보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가목)이 되며, 이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동법제31조제2항제3호나목)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해당 부동산 취득세 법정기일(2003. 5. 3)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은(2003. 5. 11) 취득세에 우선할 수 없음(행자부 세정-1756, 2004. 6. 28)

[사례] 법인세할 주민세의 법정기일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 규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고지한 당해 세목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각의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기한 내 신고하였다면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되며, 신고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그 고지서의 발송일임(행자부 세정-936, 2004. 4. 26)

5. 정리채권 미신고시 조세채권의 효력

1) 의미

공공성을 가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고 정리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의 면책』이 되는 것은 채권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체는 존속하되 정리절차 종료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즉,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自然債務』가 된다는 의미이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강제 집행소송을 구할 수가 없는 채무로서 부당이득으로 되지 아니한다.(예: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완성이후의 채무, 파산법 등에 의거 일부면제를 받는 부분의 채무). 또한 자연채무에 대한 변제는 非債辨濟로서 채무가 존

재하지 아니 함에도 착오, 도덕 등의 원인으로 채무가 있다고 변제하는 경우에 비채변제라고 한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납세자(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으로 과세권자는 정리절차에 관계없이 채납처분등이 가능한 것이다.(①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면책된 조세채권에 대한 행사여부판단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없음(재경원 기법 46019- 308 96 10. 10).

2) 정리채권의 미신고시의 실권처리

(1) 정리채권의 신고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정리채권자(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비록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리계획이 인가되면 종국적으로 실권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실권된 권리가 부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아니한다.(대판 98다20202 98. 8.21참조) 그러나 공익채권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신고하여야 할 지방세의 채권은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금에 관하여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실권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채권의 조사절차가 필요 없이 법원이 정리채권자표나 정리담보권자표에 직접 기재함으로써 동시에 확정되며 조세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만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회사정리법 제158조 ①관리인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소원, 소송 기타의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고기간과 방법

정리채권의 신고는 회사정리법 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개시결정한 날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과세권자는 지방세 채권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당해 회사에 하거나 관리인에게 신고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완신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3) 신고의 추완

정리채권자(과세권자)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신축하거나 단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불변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추완 신고기간도 시기는 정리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에 1월 이내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나 종기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

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정리채권자(과세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범위

지방세 과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범위에 법원으로부터 신고통보를 받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사후에 정리채권자(과세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되면 언제까지 신고의 추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리채권자인 과세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실권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가급적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계인 집회가 있기 전까지는 신고추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조세채권의 추완 여부판단

[1] 회사정리법 제8조는 “정리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결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3] 회사정리법 제127조와 제138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로,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둘째로,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각 1개월 내에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정리채권자·주주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일반조사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의 요건을 심리한 다음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정리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정리채권으로 추완신고된 후 개최된 일반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이 채권신고기간 마감 후 조사기일 이전에 신고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조사기일에서 조사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완신고의 하자는 치유되어 그 정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위 일반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등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을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

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 등 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대판99마2081 99. 7. 26) 